

상장폐지 제도개선(7.10. 시행)에 따른 실무 안내

I 시가총액 미달 관련 경과조치 및 적용예시('26.1.1. 시행)

- (경과조치/적용기준) 당해 연도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를 계상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* 조치 <이의신청 불가한 즉시 상장폐지 사유>

* [관리종목] (지정) 시가총액 기준 미달 30거래일 연속, (해제) ① 및 ② 모두 충족 [상장폐지]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 미충족
① 시가총액 기준 충족 10거래일 연속, ② 시가총액 기준 충족 30거래일 이상

적용기간	시가총액 기준	판단대상
현행	50억원	일별 시가총액
'26.1.1.~12.31.	200억원	
'27.1.1.~12.31.	300억원	
'28.1.1.	500억원	

□ (적용예시)

거래일	시가총액 기준	사례 1		사례 2		사례 3	
		시총	미달일 (연속)	시총	미달일 (연속)	시총	미달일 (연속)
'26.12.24	200억원	171억원	23	171억원	23	171억원	28
'26.12.28	200억원	190억원	24	190억원	24	190억원	29
'26.12.29	200억원	199억원	25	202억원	-	194억원	30 (관리종목)
'26.12.30	200억원	198억원	26	198억원	1	202억원	충족
'27.1.4	300억원	195억원	27	195억원	2	195억원	미달
'27.1.5	300억원	205억원	28	205억원	3	205억원	미달
'27.1.6	300억원	210억원	29	210억원	4	210억원	미달
'27.1.7	300억원	273억원	30 (관리종목)	273억원	5	273억원	미달
'27.1.8	300억원	306억원	충족	280억원	6	306억원	충족

<사례1> '27.1.7. 전년도 미달일수를 포함하여 시총 기준 미달 30거래일 연속으로 관리종목 지정
'27.1.8.부터 90일간 위 ①·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

<사례2> '26.12.29. 시총 기준 충족으로 미달일수 초기화되고, '26.12.30.부터 다시 미달일수 계상

<사례3> '26.12.29. 관리종목 지정되어 '26.12.30.부터 위 ①·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

II 매출액 미달 관련 경과조치 및 적용예시(‘27.1.1. 시행)

- (경과조치/적용기준)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(적정)상 매출액이 당해 연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
- 관리종목이 직전 연도 기준에 다시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
 - 다만, 직전 사업연도 평균 시가총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

적용기간	매출액 기준	판단대상			
		12월결산	3·6월결산	9월결산*	11월결산
현행	50억원				
‘27.1.1.~12.31.	100억원	26사업연도	26사업연도	26사업연도	25사업연도
‘28.1.1.~12.31.	200억원	27사업연도	27사업연도	27사업연도	26사업연도
‘29.1.1.~	300억원	28사업연도	28사업연도	28사업연도	27사업연도

*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져 다음 연도 제출하는 경우 다음 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

□ (적용예시)

(12월 결산법인 기준)

적용기간	매출액 기준	대상 재무제표	사례 1	사례 2	사례 3
‘26.1.1.~12.31	50억원	25사업연도	60억원	60억원	60억원
‘27.1.1.~12.31	100억원	26사업연도	110억원	90억원	90억원
‘28.1.1.~12.31	200억원	27사업연도	120억원	120억원	120억원
‘29.1.1.~	300억원	28사업연도	150억원	150억원	210억원

- <사례1> ‘28.3. 2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당해 매출액 기준(2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
 ‘29.3. 2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직전 매출액 기준(200억원) 미달로 상장폐지
- <사례2> ‘27.3. 2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당해 매출액 기준(1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
 ‘28.3. 2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직전 매출액 기준(100억원) 충족으로 관리종목 해제
 당해 매출액 기준(2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재지정
 ‘29.3. 2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직전 매출액 기준(200억원) 미달로 상장폐지
- <사례3> ‘27.3. 2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당해 매출액 기준(1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
 ‘28.3. 2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직전 매출액 기준(100억원) 충족으로 관리종목 지정
 당해 매출액 기준(2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재지정
 ‘29.3. 2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- 직전 매출액 기준(200억원) 충족으로 관리종목 해제
 당해 매출액 기준(300억원) 미달로 관리종목 재지정

Ⅲ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관련 적용예시('25.7.10.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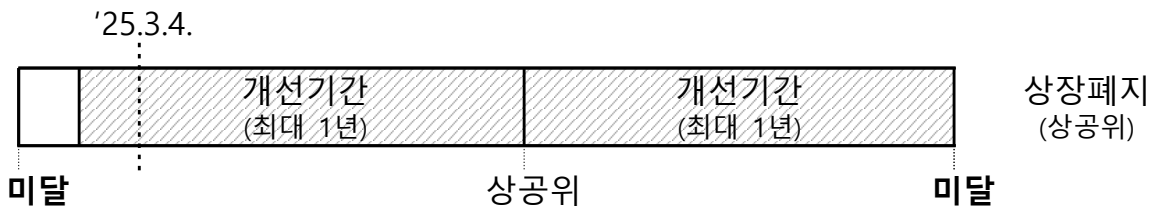
- (적용기준) 감사인 의견 미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감사의견 미달이면 상장폐지* <이의신청 불가한 즉시 상장폐지 사유>

* 당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의견 적정시 해소되거나, 감사의견 미달 해소로 실질심사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감사인 의견 미달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

□ (적용예시)

<CASE ①> '25.3.4. 이전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및 이의신청한 법인
→ 개선기간 **최대 2년** / 사유 해소시 상장유지 /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(상공위)



<CASE ②> '25.3.4. 및 '25.7.1. 사이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
→ 개선기간 **최대 1년** / 사유 해소시 실질심사 /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(상공위, 예외적으로 추가 3개월 개선기간 부여 가능)



<CASE ③> '25.7.1. 이후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
→ 개선기간 **최대 1년** / 사유 해소시 실질심사 /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(거래소)



※ 상기 내용은 실무 처리 절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 발생시 거래소 공시담당자 등에게 문의